|  |  |  |  |  |
| --- | --- | --- | --- | --- |
|  |  | 제정 | 2017.12.13 |  |
|  |  | 개정 | 2018.01.24 | 2020.02.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칙 ]** |  | 제35조 | (안전관리비 시용) |  |
|  | **제1장** | **통칙** |  | 제36조 | (자격 또는 명목으로 취업제한) |  |
|  | 제1조 | (목적) |  | 제37조 | (안전표시) |  |
|  | 제2조 | (적용범위) |  |  |  |  |
|  | 제3조 | (용어의 정의) |  | **제5장** | **작업장 보건관리** |  |
|  | 제4조 | (안전보건업무 우선) |  | 제38조 | (근로자 건강관리) |  |
|  | 제5조 | (사고예방의 책임과 의무) |  | 제39조 | (작업환경측정) |  |
|  | 제6조 |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  | 제40조 | (작업환경측정의 조치) |  |
|  |  |  |  | 제41조 | (유해물질의 취급 절차) |  |
|  | **제2장**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 제42조 | (보호구) |  |
|  | 제7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 |  | 제43조 | (작업복) |  |
|  | 제8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제44조 |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제한) |  |
|  | 제9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제45조 |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부서) |  |
|  | 제10조 | (관리감독자) |  | 제46조 | (유해물질의 표시 및 보관방법) |  |
|  | 제11조 | (안전관리자) |  | 제47조 | (유해부서 보건수칙) |  |
|  | 제12조 | (산업보건의) |  | 제48조 | (보건기준규칙) |  |
|  | 제13조 | (보건관리자) |  | 제49조 | (휴게시설 관리) |  |
|  | 제1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제50조 | (휴게시설 사용 원칙) |  |
|  |  |  |  | 제51조 | (휴게시설 청소 및 관리) |  |
|  | **제3장** | **안전·보건교육** |  |  |  |  |
|  | 제15조 | (교육 일반사항) |  | **제6장** | **산업재해 발생은폐 금지 및 재해조사 보고** |  |
|  | 제16조 | (신규채용자 교육) |  | 제52조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  |
|  | 제17조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 제53조 |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  |
|  | 제18조 | (특별 안전·보건교육) |  | 제54조 | (비상연락망) |  |
|  | 제19조 | (정기 교육) |  | 제55조 | (재해조사 및 보고) |  |
|  | 제20조 | (관리감독자 교육) |  |  |  |  |
|  | 제21조 | (강사) |  | **제7장** | **위험성 평가** |  |
|  | 제22조 | (교육계획 및 서류보존 등) |  | 제56조 |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  |
|  | 제23조 | (직무교육) |  | 제57조 | (위험성평가 교육) |  |
|  |  |  |  | 제58조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  |
|  | **제4장** | **작업장 안전관리** |  | 제59조 | (위험성평가 주기) |  |
|  | 제24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  | 제60조 | (위험성평가 방법 및 서류 보존) |  |
|  | 제25조 | (안전·보건 진단) |  |  |  |  |
|  | 제26조 | (사전 인가 등) |  | **제8장** | **보칙** |  |
|  | 제27조 | (작업 중지 등) |  | 제61조 | (무재해 운동) |  |
|  | 제28조 | (인전인증 사용) |  | 제62조 | (안전, 보건 제안제도) |  |
|  | 제29조 | (준수사항) |  | 제63조 | (상벌) |  |
|  | 제30조 | (안전검사) |  | 제64조 | (문서기록 보존) |  |
|  | 제31조 | (안전 수칙) |  | 제65조 | (승인 및 협의) |  |
|  | 제32조 | (안전점검 및 순찰) |  | 제66조 | (기타 사항) |  |
|  | 제33조 | (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  |  |  |  |
|  | 제34조 | (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  | [ 부 칙 ] |  |  |
|  |  |  |  |  |  |  |

[ 총 칙 ]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CLASSYS(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보전을 도모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생산능률을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는 법령이나 타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한 각 부서에 소속된 전 근로자(출장근무자 포함),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정의를 준용한다.

1. “산업재해” 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한다2. “중대재해” 라 함은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하거나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하거나 ③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3. “업무상 재해” 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9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6.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8.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9.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믈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0.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1.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12.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13. “보건관리”라 함은 종업원을 질병과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14. “안전관리자” 라 함은 안전업무를 계획, 실시, 통제, 감독, 시정대책의 추진을 실시 하는 자를 말한다.

15. "안전관리”라 함은 인명과 시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16. "보건관리자”라 함은 종업원의 보건에 관한 업무를 계획, 실시, 통제감독, 시정대책 의 추진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17. "산업보건의”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사고방지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인력 및 제도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 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가 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타 부서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계획, 제작, 기타 시설의 정비와 설계 및 그 시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위험이 수반되거나 내포된 모든 업무를 시달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재해예방의 책임과 의무)

① 노사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제 6 조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①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도급업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법 제63조에 의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7조 (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조직 구분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기본조직과 활동조직으로 구분한다.

1. 기본조직

가.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행사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한다.

다.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본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활동조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부서

안전보건관리 주관부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주관하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부서 업무

안전보건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계 업무의 개선, 계획수립, 연구개발 및 제 기준의 제정 보완

2. 안전관계자 교육 및 훈련 실시

3. 안전점검 및 재해 사례 분석

4. 유해, 위험예방 업무

5. 환경, 보건, 위생관리

6. 소방, 위험물, 고압가스 등의 관리

7.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④ 각 부서업무

1. 안전교육, 사고조사보고, 안전보호구 관리

2. 소방시설, 유지관리

3. 부서내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4. 안전관계 통계 유지

5.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6.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관리

7. 위험기계, 기구의 설비개선 및 신설, 변경통보

8. 기타 부서내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대표자는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및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5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유지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달성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에 관한 사항

13.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4. 기타 안전보건(작업중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법 제62조에 의거 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 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업장 및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 하는 책임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시행규칙 제80조 및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하여 작업장 순회 점검

5.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 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6.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7. 위생시설 등 시행규칙 재81조에 명시된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제10조 (관리감독자)

① 각 부서장은 법 제16조에 정한 관리감독자로서 경영 조직에서 생산 및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기 소속작업장 및 근로자들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감독자가 직접 지휘 감독하는(이하 ‘당해작업’이라 칭한다)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7. 안전목표와 방침 전달

8. 법 제29조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9.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10.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지도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가 ①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업무 수행상 문제가 발생시는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다음 각 호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가 직접 관리∙감독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1. 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

3. 특정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작업

4. 고소높이 2M이상에서의 조립 및 해체작업

5. 전압이 75V 이상의 전기시설에서의 정전 및 활선작업

6. 사업장 내부에서 행해지는 도급작업

③ 사업주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을 취급할 때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 방호장치를 수시 점검하는 일

2.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3. 유기용제 또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을 지휘하는 일

4. 연 취급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5. 작업이 변경될 때는 근로자에게 미리 당해 작업방법을 주지시키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6. 모든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7.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8.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을 감시하는 일

제11조 (안전관리자)

① 법 제17조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한다. 법 제17조 4항에 의거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수행토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2.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본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유해, 위험 기계기구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조언∙지도

7. 안전관계 보고서의 작성보고

8. 안전관계 요원의 지도 및 독려

9.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해여부 확인

10. 법 제36why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11.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12조 (산업보건의)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의자율고용)에 의거 채용․고용․임명․ 지정 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 직무는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4조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보건관리자)

① 법 제18조에 의거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건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8조 4항에 의거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수행토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 중 보건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2.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시행령 제31조 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의사의 경우에 한함)

4. 근로자의 건강상담

5.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사 및 간호사에 한함)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조치

다.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 라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6.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의사 및 간호사의 경우 제외)

7.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9. 법 또는 법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10.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11.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12.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감독

13.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14.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15. 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6. 기타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주는 법 제24조 제7항 및 영 제35조에 의거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호의 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위원장은 대표자로 한다.(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대행기관의 담당자)

3. 사업주가 지명한 9인 이내의 관리감독자

4.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를 대표하는자) 1인 및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인이내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기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 결과 주지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사업장내 게시판 부착

나. 자체정례 조회시 집합교육에 의한 교육

다. 기타 방법

2.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3년간 기록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 (교육 일반사항)

① 교육의 구분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책임에 따라 법 제29조에 의한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과 법 제32조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1.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에 따라 신규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2. 직무교육은 노동부장관이 법에 의거 선임된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지정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교육 담당자

안전보건담당자가 교육담당자 임무를 수행한다.

③ 교육계획 수립

교육담당자는 매년 1월중에 당해년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책임

1. 전 근로자는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사내 안전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2.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교육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계획된 교육에 참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시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불참사유를 보고 승인 받아야 한다.

4. 적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교육 불참 시는 사업장의 별도 징계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16조 (신규채용자 교육)

① 교육대상자: 신규 채용 시

② 교육시기: 담당업무 종사 전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② 교육방법: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교재를 작성하거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며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교육내용

1. 위기관리의 첫걸음

2.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3.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4.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5.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6.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7.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8.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교육대상자: 작업내용 변경자

② 교육시기: 변경업무 개시 전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③ 교육방법: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 교재를 작성하거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교육내용: 신규 채용자 교육과 동일

제18조 (특별 안전·보건교육)

① 교육대상자: 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② 교육시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하여 총 16시간 실시 (단, 단기간작업 및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③ 교육방법: 작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 교재를 작성하거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표5의 제1호 라목 각호에서 정하는 해당 작업

제19조 (정기 교육)

① 교육대상자: 모든 근로자(전 직원)

②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1시간 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2시간 이상 또는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한다.

③ 교육방법: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 교재를 작성하거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교육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20조 (관리감독자 교육)

① 교육대상자: 부서장 등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② 교육시간: 년16시간 이상

③ 교육방법: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전문기관을 통한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 이수증을 보관 한다.

④ 교육내용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21조 (강사)

① 강사는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지정 교육기관(안전보건공단, 교육강사협회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당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제22조 (교육계획 및 서류보존 등)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대행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1월 중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원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하는 교재, 괘도, OHP, 슬라이드, VTR 등을 보조 재료로 이용한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23조 (직무교육)

① 교육 대상 및 시간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한 안전보건리책임자(대표자 등)는 선임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받으며, 2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수강 신청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을 통하여 집합교육 또는 혼합교육으로 이수하며, 교육 이수증을 보관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4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매년 1월중 안전보건관리대행 담당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보건 진단)

법 제47조에 의거 관할 노동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노동부 지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할 노동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전 인가 등)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59조에 의한 도급 시 사전 인가가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2. 법 제48조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 시

제27조 (작업 중지 등)

① 법 제51조에 의한 시정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작업중지 조치는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③ 모든 작업자는 1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확산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 (안전인증 사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84조 규정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를 구입시에는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안전인증에 합격한 것을 구입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29조 (준수사항)

① 작업자는 법 제80조의 방호조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 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할 것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할 것

② 관리감독자는 1항 각호의 보고가 있을 시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허가, 원상회복,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93조 규정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신청은 검사주기 만료30일전에 위탁 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결과 교부 받은 검사필증은 해당 기계․기구․설비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한다.

④ 현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기 없으며, 추후 설치 시 규정을 적용토록 한다.

제31조 (안전 수칙)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 작업부서의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당해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내 작업자 간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된다.

1. 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제정하여 사용한다.

2.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곳으로 작업조장이 제정하여 사용한다.

제32조 (안전점검 및 순찰)

① 점검 및 순찰의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작업자 등 모든 계층의 책임자는 자기 소관 작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발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임이 있다.

② 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최소한 분기별 1회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월1회이상 관리감독자 주관 현장 담당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사업주는 새로운 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방법 도입 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안전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③ 점검방법 및 내용

점검자는 반드시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 하되 점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방호장치 부착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 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안전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 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점검결과 조치

1.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유,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발부하고 해당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 후 안전관리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작업자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작업방법의 변경 또는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 (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① 안전 기준

1.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 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2. 1호의 안전기준은 산업안전기준 내용 중에서 사업장에 실제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기준에 만족하고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한다.

② 표준 안전작업 지침

1. 모든 작업은 작업 별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표준안전작업 지침을 작성하여 작업장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작성한다.

2. 1호의 표준안전작업 지침은 작업조장 책임 하에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3. 작업자는 표준안전지침에 의해 작업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1에 해당될 때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에 대하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가. 기계설비의 신규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나.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다.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제34조 (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기준 상 위험물질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위험물)의 보관시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위험물 취급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 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며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무자외는 츨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② 1항의 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는 당일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타 고압가스 저장소, 변전실, 유류 저장소 등 유해 또는 위험물 보관장소에 대해서도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 (안전관리비 사용)

① 사업주는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표준안전관리비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사용토록 한다.

② 도급인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작업을 위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비는 타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 (자격 또는 명목으로 취업제한)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는 필요한 자격 면허, 경력 또는 기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제37조 (안전표지)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별표9까지에 의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8조 (근로자 건강진단)

① 건강진단의 구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 제129조부터 법 제132조까지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건강진단 실시방법

1. 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의 경우는 매년 2월말까지 실시계획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2.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다만, 당해 연도중에 다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가 사직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는 자가 전 사업장에서 받은 채용시 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의 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일반 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특수건강진단은 법130조 1항 및 시행규칙 별표22의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 당해업무 배치 전환시 및 6월에 1회이상 또는 1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으로 시행규칙 별표 24호의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③ 진단결과 조치

1.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 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진단결과의 보존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 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또는 전산자료는 30년간 보존한다.

제39조 (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측정주기마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 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작업환경측정의 조치)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당해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이내 관할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되 상반기 측정결과는 8월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연도 2월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기관에서 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결과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1조 (유해물의 취급 절차)

① 사업주는 산업보건기준규칙 제14조 별표 6의 특정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반은 법에 의한 유해물 취급부서로 지정하여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해물질 취급부서는 부서업무와 업무체계를 정하고 작업지휘자를 받도록 한다.

제42조 (보호구)

①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장과 지급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접작업 및 사상작업: 보안경 및 보호장갑

2.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3. 소음 수준이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귀마개, 귀덮개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5. 중량물 취급 작업: 안전화

6.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작업: 호흡용 보호구

7. 기타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②. 보호구의 지급기준은 과거의 소모실적과 작업이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주기를 정해 소요량을 구매하여 작업장 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 착용하도록 하되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에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당 근로자는 작업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기타 용도에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 관리는 해당 작업장소의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⑤ 작업장은 보호구를 항상 기능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작업반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작업복)

① 필요한 경우 작업장 근로자에게 (동절기용, 하절기용) 작업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내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에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정전기에 의한 점화원이 화재, 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소재로 만든 작업복을 지급해야 한다.

제44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성 질환

2. 정신질환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

4. 기타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질환

② 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유해물질에 중복되는 등 당해 업무로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부서)

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은 별표7에서 정 한 물질을 말하며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방법에 의한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부서장 책임하에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 야야 한다.

② 1항의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부서에 해당하는 곳은 담당자이외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6조 (유해물의 표시 및 보완방법)

관리대상유해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에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 요령

제47조 (유해부서 보건수칙)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작업수칙,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작업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48조 (보건기준규칙)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소음, 진동, 분진, 환기, 정리, 정돈, 청소,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시행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1항의 보건 기준을 기초로 작업자의 건강상 특히 필요한 곳에는 보건 수칙을 제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건 수칙은 관계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작업자는 보건 수칙을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 (휴게시설 관리)

① 휴게시설이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 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옥내휴게실 뿐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도 포함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0조 (휴게시설 사용 원칙)

① 휴게시설을 이용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입점 업체 판매 근로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여러 직급이 함께 사용하더라도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③ 휴게시설은 남녀가 함께 사용시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함께 노력한다.

④ 휴게시설 내 설치되어있는 의자, 책상 등은 사용 후 다음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 함이 없도록 청결 한 상태를 유지한다.

⑤ 냉, 난방장치는 한 사람이 임의 적으로 조작하여 주변에 많은 동료 근로자가 불편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⑥ 의자의 파손 등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시설팀에 요청하여 다른 근로 자들이 쉬지 못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⑦ 휴게시설 내 비치되어있는 정수기, 냉장고, 냉난방기, 휴지 등 물품 등은 많은 근로자 들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소손발생시 시설팀에 보고요망)

제51조 (휴게시설 청소 및 관리)

① 휴게시설을 이용 후에는 다음 근로자가 청결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한 폐기물 직접처리토록 한다.

② 휴게시설의 청소는 1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청소를 통해 청결을 유지한다.

③ 휴게시설 점검자를 지정하여, 1주 1회 이상 청결상태 및 물품 관리상태, 환경유지 상태(휴게공간 내 자재 적재상태 등) 등 점검, 관리하는 체크리스트 비치, 작성으로 근로자들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④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개선 한다.

⑤ 휴게시설 내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 초기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기 등 소방시설물을 비치하고,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제6장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재해조사 보고

제52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장의 직속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업무 담당자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 안전업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업장 지정 병원에 연락 및 후송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4조 (비상연락망)

재해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제55조 (재해조사 및 보고)

① 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 대행기관의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업무담당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업무담당자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사항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⑤ 안전관리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안전업무담당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⑦ 안전담당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담당자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관리토록 한다.

제7장 위험성 평가

제56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 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작성한다.

제57조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목적,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8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59조 (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60조 (위험성평가 방법 및 서류 보존)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이상 보존 한다.

제8장 보칙

제61조 (무재해 운동)

① 무재해 운동

사업주는 전 근로자가 참여하는 통합된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 시행 요령에 관한 노동부 예규에 의거 무재해 운동을 실시한다.

② 추진 기구

무재해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무재해 추진위원회로 하여 무재해운동을 총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추진방법

1. 무재해 운동 추진기법은 5C운동이나 위험예지훈련 등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각 작업장 설정에 맞는 기법으로 개발하여 시행한다.

2. 안전담당자는 사업장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무재해 기록판 및 무재해기를 게양(부착)한다

④ 무재해 운동 포상

무재해 운동 유공자에 대한 부서 및 개인포상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한다.

제62조 (안전, 보건 제안제도)

① 전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을 매 분기 1회이상 부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마다 제안함을 설치하여 전 근로자가 수시로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3조 (상벌)

① 표창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안전보건강조기간 행사 중에 표창 상신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도록 한다.

2. 표창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나.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다. 안전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징계

1. 법과 법이 정한 명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2. 징계요구 대상은 다음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나.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다. 기타 감독관리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사업장 에 손해를 끼친 자

라. 동일 재해를 반복하여 발생한 자

③ 상벌 평가기준

1. 표창 또는 징계 요구시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소실금액

나.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실적

다. 무재해 목표달성 실적

라. 안전수칙 실천상태, 교육 및 안전활동

마. 근로자의 참여의식 및 이행상태

사.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사내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64조 (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 (승인 및 협의)

① 부서에서 유해·위험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 안전업무담당자 경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해야한다.

1.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2. 전기작업

3. 소방 및 안전시설과 장치의 해체 또는 기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작업 등

②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상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및 작업장 안전수칙 변경 시

2.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발주 전

3. 건물 또는 생산시설의 신설, 증설, 개수 시

제66조 (기타 사항)

①기타 안전관계규정 제정

안전관련 타 법률에 의한 방화관련규정 및 전기보안규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② 규정 제정 및 개정 등

1. 본 규정 제정 및 개정은 사유 발생시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사업장내 모든 임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규정은 사업장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전 직원이 알게 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12월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01월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02월13일부터 시행한다.